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4
----------	-----

제출년월일 : 199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현재 시행중인 파주시폐기물관과태료관련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과태료에 관한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청문조항은 삭제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가. 청문삭제 (안 제3조)

나. 과태료부과기준 개정 (안 별표1)

· 개정 4개항목, 신설 15개항목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4.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법 제16조 제2항)	30	50	100
	5.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법 제24조 제5항)	100	200	300
	6. 폐기물 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24조 제3항 및 제41조)	30	50	100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 제3항 또는 법 제44조의2 제1항)	100	200	300
	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4항)	30	50	100
	9.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39조 제1항)	30	50	100
	10.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 이외의 교육대상자	30	50	100
	1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3조)	30	50	100
	12.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3조 제1항)	30	50	100
	13. 재생처리신고자가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의2 제3항)	100	200	300
	1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 제1항)	30	50	10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법 제7조)			
	가. 별도 기구없이 폐기물을버리는 행위			
	(1)쓰레기, 죽은짐승등 투기	5	7	10
	(2)담배꽂초, 껌, 휴지 투기	5	5	5
	나.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20	3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20	30
	라. 차량,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30	5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채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동법 제26조의 폐기물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2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외)	50	70	100
	2.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1항)	10	20	50
	3.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2항)			
	가.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시에서 지정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50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	10	20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1.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3조 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나. 제1종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다. 제2종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	200	300
	라.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	200	300
	2. 제품의포장방법및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법 제15조 제2항)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때	150	200	300
	(2)기준보다 25%이상 50%미만 초과한 때	200	250	300
	(3)기준보다 50%이상 초과한 때	250	300	300
	나.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100	150	300
	(2)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한 때	150	200	300
	(3)기준보다 3회이상 더 포장한 때	200	250	300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절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마.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이 3만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가 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 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 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 의 완충재 감량화 기준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사. 제조자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 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 재 회수의무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3.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55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 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사 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 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 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	200	250	30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절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 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 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100	150	200
	다.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200	250	300
	(2)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 복 합목욕탕)	200	250	300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 니엄업	200	250	300
	(2)여관 및 여인숙업	200	250	300
	마.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쇼핑센 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 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 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 에 대한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바.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매 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절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아. 통계법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 기기, 가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4.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 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법 제16조 제2항)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	50	100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80	90	100
	5.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4조 제3항)	30	50	1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 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초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1조(청문) (삭 제)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적용범	부	과	항	목	부과금 액(만원)			부과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생략)													
	가. (생략)													
	(1) (생략)				5	5	5	5	7	10				
	(2) (생략)				3	3	3	5	5	5				
	나. (생략)				5이상	5이상	5이상	10	20	30				
					10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상	10이상	10이상	10	20	30				
	다. (생략)				20이하	20이하	20이하							
					20이상	20이상	20이상	20	30	50				
	라. (생략)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상	50이상	50이상	50	70	100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2. (신설)													
								10	20	50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과태료의 부과기준

적용범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3. (생 략)				10	20	50
	가. (생 략)						
	나. (생 략)				5	5	5
	4. (신 설)						
	5. (신 설)						
	6. (신 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적용범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3.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가. 생활폐기물을 배출시에 시에서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	10	20
	4.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 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법 제16조 제2항)				30	50	100
	5.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법 제24조 제5항)				100	200	300
	6. 폐기물 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24조 제3항 및 제41조)				30	50	100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7. (신 설)	8. (신 설)	9. (신 설)	10. (신 설)	11. (신 설)	12. (신 설)			100	200	300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 제3항 또는 법 제44조의2 제1항)	30	50	100								
													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 제4항)	30	50	100				
																	9.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신고한 자 (법 제39조 제1항)	30	50	100
									30	50	100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나. '가' 이외의 교육대상자	30	50	100								
													1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3조)	30	50	100				
									30	50	100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3. (신 설)										
	14. (신 설)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13. 제생처리신고자가 사용중지 또는 사용 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의 제2 제3항)				100	200	300
	1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 제1항)				30	50	100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적용범	부	과	항	목	적용범	부	과	항	목	부과금 액(만원)		1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1. (신 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1.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3조 제2항)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제1종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제2종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라.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품의포장방법및제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2항)가. 포장공간비를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때 (2)기준보다 25%이상 50%미만 초과한 때 (3)기준보다 50%이상 초과한 때 나.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2)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한 때 (3)기준보다 3회이상 더 포장한 때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200	250	300			
	2. (신 설)					2. (신 설)				150	200	150	200	300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200	250	3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0	250	300
												200	250	300
												200	250	300
												200	250	300
												200	250	300
												200	250	300
3. (생략)												200	250	300
가. (생략)												200	250	300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만원)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생 략)				150	250	300					200	250	300
	나.의2. (생 략)				30	50	100					100	150	200
	다. (생 략)				100	200	300					200	250	300
					100	250	300					200	250	300
	라. (생 략)													
	(1) (생 략)													
	(2) (생 략)													
	(1) (생 략)				150	250	300					200	250	300
	(2) (생 략)				100	200	300					200	250	300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과대료의 부과기준												과대료의 부과기준		
적용범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만원)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다. (생 략)				150	250	300	200	250	300				
	바. (생 략)				200	250	300	200	250	300				
	사. (생 략)				150	250	300	200	250	300				
	아. (생 략)				100	120	300	200	250	300				
다.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아. 통계법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 기기, 가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업, 공금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신 · 구문대조표

현			형			개			정			안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 (생 략)				4.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 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법 제16조 제2항)									
	가. (생 략)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	50	100						
	나. (생 략)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80	90	100						
	5. (신 설)				5.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4조 제3항)	30	50	100						